

알선, 교육제도, 국민연금, 퇴직금제도 등 다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들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교육 및 직업알선(소개), 직업훈련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고용보험 정착의 기본요건이다.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보험적 성격보다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사 양당사자는 물론 정부의 인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의 활성화·정착을 위한 일반

예산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내는 보험료에만 의존하기에는 고용보험제도가 너무 중요하며 정부에서 보험자로서 관리자 역할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정부시책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조직과 자금의 양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각종의 장려금, 지원금의 지급절차와 요건을 간소화시켜 고용보험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책

정 홍 남*

1. 서 언

고용보험이란 실업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직업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불가피하게 실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계보장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이면서 노동시장정책인 것이다.

고용보험에서의 사업내용은 크게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실업급여의 내용에 대해서만 약술하고, 실업급여가 개시된 '96년 7월 1일 이후의 운용실태를 알아보고, 실업급여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들어 개선책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2. 실업급여의 내용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재직하고 임의 퇴사가 아닌 사업

* 인천지방노동청 고용보험과장

● 실업급여신청자수(1996. 7. 1~12. 31)

(단위: 명)

실업급여 신청자수	성 별		연 령 별					이 직 사 유				계약기간 만료기타
	남 자	여 자	25세 미만	25~29 세	30~49 세	50~59 세	60세 이상	사업주 권유	정리해고 등	회사폐업	정년	
727	614	113	18	22	417	233	37	337	110	93	42	145

주의 정리해고나 사업체의 도산·폐업 등으로 실직을 하게 될 때에는 노동관서에 실업을 신고하면 약 2주간의 대기기간을 경과한 후 부터 매 2주를 단위로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근로자는 실직이 되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했다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는 대기기간(2주 정도이며 구직활동을 하여야 함)이 경과하고 난 후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나와 지난 2주 동안 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결과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서에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재취업 이후 수급자격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 있을 때에는 남아 있는 수급자격일수의 3분의 1만큼을 조기 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재취업이나 부분취업 또는 자영업을 개시 하고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가 사후에 발각이 될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수급자격 중지는 물론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액의 반환과 더불어 벌칙으로 기 수령한 액의 배

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도 있다.

3. 실업급여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가. 실 태

실업급여의 지급이 개시된 '96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고한 실직자의 성별·연령별·이직사유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업급여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1) 소극적인 구직활동 및 재취업의 곤란

실업급여의 목적이 실직자가 근로소득의 상실로 인한 생활의 곤궁을 줄여주면서 가급적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에도 수급자격자 중 상당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인천에 소재한 H유리에서 '96년 8월 중순 경 집단적으로 명예퇴직한 258명의 수급자격자 중 '96년 12월말 현재까지 불과 8명(취업률 3%)만이 취업을 한 상태이다. 이들은 고임자들로서 대부분 구직급여를 범상 최고상한액(수령액: 월 약100만원)으로 받고

있으며, 사실상 이들은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격기간 동안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계속받아 법상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2) 부정수급 사례 빈발

수급자격자 710명 중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가 16명(2.3%)으로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기수령한 실업급여액의 반환 내지 배액을 추징한 바 있으며, 2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

부정수급의 사례는 대부분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부분취업을 하고서도 소득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취업이나 소득사실 내용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상당한 제재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음에도 이와 같이 부정수급자가 빈발하고 있음은 취업한 사실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들이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한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부정수급 사례는 객관적인 유관기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업에의 재취업을 하지 않고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 등으로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상은 위 보다 더 많은 부정수급자가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3)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지시 등의 활용 저조

수급자격자 710명 중 직업지도관이 수급자격자에게 연령, 능력, 재취업 가능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이라고 소개를 하거나 직업훈련 지시 등으로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의 수가 극히 저조하다.

'96년 12월 31일 현재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직업훈련 지시에 의해 직업훈련수강중인 수급자격자는 1명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직업지도관의 상담에 의해 적합한 직장을 소개받거나 지시에 의해 직업훈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급자격자 본인의 뜻에 따라 여러 조건의 직장들을 스스로 비교하여 찾아보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직업훈련 지시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소개나 직업훈련 지시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부족, 적시에 필요한 훈련직종의 개발 미비, 좋은 조건의 구인업체 개척 미비, 수급자격자의 인식 변화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의 촉진 유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조기에 재취업한 수급자격자는 43명이었다. 이는 총수급자격자 710명 대비 6%에 머무르는 저조한 실적으로 실업급여의 목적인 재취업의 촉진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하겠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시 재취업 의사가 있는지 또는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심도있게 상담하여 구직활동의 적극성 여부를 가능한 명확히 가려내어 재취업 의사가 없는 수급자격자들에게는 과감하게 실업인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3분의 1을 조기재취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나. 부정수급 예방 및 제재 처분의 유연성 제고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이 있었음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가 추후에 발각이 될 때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보아 부정수금액 반환 및 배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업신고일에서부터 철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하겠으며, 또한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발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부정수급자는 금전상의 불이익과는 별도로 고발조치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확인하거나 기타 사회보험과의 전산 대조 등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제재함으로써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야 하겠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기준은 단순한 취업일자외의 착오 기재이전, 고의적이전 취업 사실을 속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자로 보아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규정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일부 민원인은 거세게 항의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의 초기에 제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상당한 제재가 뒤따름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확실적인 기준이 실무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부정수급방지기준에 다소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본다.

다.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지시 등의 활성화

수급자격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단순한 구인업체의 명단 제공이나 스스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급자격자의 연령, 능력, 재취업 가능성 등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으로

소개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직업지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으로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실업급여의 지급정지 등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으며, 특히 고연령의 수급자격자는 스스로 재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구인업체 확보가 우선되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5. 결 어

실업급여 지급개시가 이루어진 '96년 7월 1일 이후의 실업급여제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실업급여제도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정착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실업급여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면, 이들은 제도의 보완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직은 미흡한 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직면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본다면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장기적인 운용방안을 보다 다양하게 국민에게 홍보·안내하여야 하고, 수급자격자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장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의 배치와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망직종으로의 직업훈련 실시와 직업소개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소신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